

「제11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」 모집기간 연장 공고

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, 생산성 향상, 수출 증대 등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『제11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』 모집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7월 31일

수 원 시 장

1. 선정개요

- 선정인원 : 종합대상 1명, 부문별 대상 6명
- 선정부문 : 경영혁신, 기술개발, 수출진흥, 창업및벤처, 일자리창출, 노사화합
- ※ 수상 적격자 없을 경우 미 선발

2.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

① 신청서 제출

- 신청기간 : **2025. 7. 31.(목) ~ 8. 12.(화)** (평일 09:00 ~ 18:00)
- 접 수 처 :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2025. 8. 12.(화) 소인분까지)
※ (16490)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(인계동), 수원시청 기업지원과
- 신청 및 추천권자 : 당해 기업, 수원시 중소기업 유관기관·단체장
- 신청서류
 - 추천(신청)서 1부
 -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
 - 법인등기부등본 1부
 - 사업자등록증명 1부
 - 국세·지방세납부확인서 각 1부
 -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
 - 수출실적증명원 1부
- 신청서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uwon.go.kr>)의 “공고/고시/입법예고” 에서 다운받아 사용

② (신청서 검토결과 자격 적합 기업에 한하여) 서류 제출

- (제출기한) : **2025. 8. 22.(금)한** (09:00 ~ 18:00)
- (제출대상) 신청서 검토 적격 업체 ※ 기업에 개별 통보
- (제출방법) 방문 또는 우편접수(2025. 8. 22.(금) 소인분까지)
- (제출서류)
 - 재무제표('23~'24년, 2년간) ※경영혁신 분야의 경우 3개년('22~'24년)
 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'23~'24년, 2년간) ※경영혁신 분야의 경우 3개년('22~'24년)
 - 분야별 제출서류 등【별지4호 참조】 • 가산점 증빙서류 등【별지4호 참조】

3. 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아래의 중소기업
 - 1) 본사 또는 공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제조 기업으로 공장등록업체
 - 2)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체) 중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
 - 가)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이고,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
 - 나) 창업보육센터·수원시 기업 입주시설·지식산업센터·벤처기업 집적 시설 등 입주기업
 - 3) 문화콘텐츠산업(산업분류 : 별첨)을 영위하는 기업

4. 신청 제외대상

- 「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」 수상 경력이 있는 업체
-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또는 대표
-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
-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
- 기업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

5. 평가항목

- (요건검토) 신청자격 충족 여부, 제외대상 및 제출 서류 확인
- (정량평가) 부문별 평가지표에 따른 서류심사(60점)

구분	평가지표
경영혁신	생산성 향상률, 자본투자 효율, 매출액 증가율, 자기자본비율, 생산노동자 교육·연수
기술개발	산업재산권 보유 및 규격인증, 기술연구비 투자, 유동자산증가율, 기술인력 및 시설 보유 등
수출진흥	제품우위성, 수출금액, 수출 증가율, 수출비중, 수출품목 다변화, 수출경쟁력
창업및벤처	매출액 증가율, 노동자 증가수, 기술연구비 투자, 기술인력 및 시설 보유
일자리창출	노동자 증가율, 노동자 수, 매출액 증가율, 기술인력 및 시설 보유, 자기개발 장려, 청년취업률
노사화합	기업업력, 노사분규 발생건수, 노사대표 인터뷰건수, 화합행사, 후생복지, 재해예방

- (정성평가) 심사위원회 평가(40점)

지역경제기여도(15점)	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(10점)	지속적 성장가능성 및 미래가치(15점)
고용창출, 수출기여도 후생복지, 인력양성	지역사회봉사, 관내 공익캠페인, 사회 기부참여	유사기술대비 신규성, 독창성, 첨단성, 장래의 시장규모

- (가 산 점) 인증서, 지정서 등 부문별 가산점 별도 부여(10점)
※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

6. 수상자 특전

※ 유효기간 : 시상일로부터 3년

- 트로피 및 상장 수여(훈격 : 수원시장)
-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(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운영조례 제13조)
-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 신청 시 가점부여(1회 10점)
-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 추가지원(2.5%)
-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
-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3년간 유예
(수원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0조)

7. 결과발표 및 시상

- 결과발표 : 2025. 9월 중 ※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·공고
- 시상 : 2025. 10. 28.(화)(제3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 시)
※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(7개 사)은 당해 기업인의 날 행사시 수상기업 부스 운영에 참여 예정
(추후 별도 안내)

8. 문 의 처

-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(☎ 031-5191-2662)